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고	배포시	배포	2017.12.10(일)
책 임 자	외교부 북핵정책과	담 당 자		
	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 (02-2100-1730)		김동현 사무관 (02-2100-1739)	
	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이 형 렬 (044-215-4750)		홍광표 사무관 (044-215-4754)	

제 목 : 우리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지정

□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 하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활동 차단을 위해 12.11(월)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

○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

※ 제재대상(단체 20개·개인 12명)

단 체 (20개)	
- 라선국제상업은행	- 조선아연공업총회사
- 농업개발은행	- 대원산업회사
- 제일신용은행	- 송이무역회사
- 하나은행	- 려명해운경영유한책임회사
- 국제산업개발은행	- 조선금별무역
- 진명합영은행	- 능라도룡악무역회사
- 진성합영은행	- 조선남남협조회사
- 고려상업은행	- 조선능라도선박회사
- 류경상업은행	- 대봉선박회사
- 조선컴퓨터센터	- 조선유성선박회사
개 인 (12명)	
- 김수광(駐 벨라루스 경찰총국 요원)	- 김동철(만수대창작사 소속, 나미비아 소재)
- 김경혁(제일신용은행 소속, 중국 소재)	- 차승준(고려금강은행 소속, 중국 소재)
- 박철남(제일신용은행 소속, 중국 소재)	- 허영일(하나은행 소속, 중국 소재)
- 리호남(류경상업은행 소속, 중국 소재)	- 지상준(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, 러시아 소재)
- 리성혁(고려은행 소속, 중국 소재)	- 곽정철(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, 러시아 소재)
- 김영수(원양해운 소속, 베트남 소재)	- 럽희봉(조선금강그룹 은행 소속, 러시아 소재)

-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, 해당 단체 및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,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우리 정부는 대북 제재·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냄으로써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계획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바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-	---	--	---

□ 금융위는 공협법*에 따라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(WMD) 확산 관련자를 “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”로 지정

*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('08.12월 제정)

- (제한내용)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는 ①금융거래시, ②재산권(동산, 부동산, 채권 등) 처분시 금융위의 사전허가 필요
- (제재내용) 허가 없이 해당행위를 한 경우,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- (제한대상자) 현재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 1,328개 개인·단체를 제한대상자로 지정 중

지정 근거	지정절차	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	
공협법§4① 1호 국제법규의 성실한 준수	①해당 UN 안보리 위원회의 제재자로 등재 ⇒ ②공협법상 제한대상자로 자동 지정	UN안보리결의	대상자 수
		1267/1989/2253호 (ISIL, 알카에다)	개인 256, 단체 80
		1988호(탈레반)	개인 135, 단체 5
		2231호(이란)	개인 23, 단체 61
		1718호(북한)	개인 63, 단체 53
		계	총 676 (개인 477, 단체 199)
공협법§4① 2호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	①타국의 요청 또는 자발적 선정 ⇒ ② 기재·외교·법무부 동의 ⇒ ③고시	총 652개 개인·단체 지정 ※ 대북독자제재 166개(개인 97, 단체 69) 개인·단체 포함	

※ 금융거래등 제한(금융위)와 외국환거래 제한(기재부) 비교

구분	금융거래등 제한	외국환거래 제한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§4① • 제한대상자 지정고시(금융위 고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환 거래법§15② 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§29① • 지급영수허가지침(기재부 고시)
지정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무부·외교부·기재부의 동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교부·통일부·산업부·금융위의 협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이 지정
허가필요 행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한대상자와 금융회사간 금융 거래 또는 재산권 처분행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재대상자와 거주자·비거주자간 외국환거래
허가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거래등시 금융위 사전허가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환 거래時 기재부장관(한국은행) 사전허가 필요